

『프랑스,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지속가능성 지수 법령 초안』 심층분석 보고서

2023. 08.

통보문서 번호	미통보문	규제분야	전기전자/전기기기
통보국	프랑스	HS Code	84, 85
작성기관	TBT종합지원센터	작성자 문의처	엄기현 02-3487-6148

[목 차]

1. 규제 개요	1
2. 규제 제개정 내용	3
3. 관련 법령 및 표준	8

□ 발표 내용

- 프랑스 총리는 '23.8.2에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특정 범주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수의 도입을 제공하는 환경법 L. 541-9-2조의 시행 규칙을 정의함¹⁾
 - 이 지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의 기준 및 매개변수뿐만 아니라 전달 및 표시와 관련된 의무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지정해야 함
 - 동 보고서는 환경법 R. 541-233~238을 다루며, 제품별 지속가능성 지수 계산 방법은 프랑스 공식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

규제명	▪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지속가능성 지수, 법령 초안, 2023년 8월 ▪ Sustainability Index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, Draft Decree, August 2023
규제부처	▪ 프랑스 총리 ▪ French Prime Minister
요구사항 유형	▪ 라벨링, 소비자 정보 제공, 상품 정보 제공
제·개정 상태	▪ 개정 초안
WTO TBT 통보	▪ 미통보
고시일	▪ 2023년 8월 2일
채택일	▪ -
의견수렴 마감일	▪ 2023년 11월 3일
발효일	▪ 2024년 1월 1일
준수 기한	▪ -

□ 적용범위 및 수출규모

적용대상	▪ 세탁기, 컴퓨터 모니터, 데스크톱 컴퓨터/개인용 컴퓨터, 전기 잔디 깎는 기계, 전기 및 전자 장비(Abrv: EEE), 전자 디스플레이 [다른 이름: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], 노트북/노트북 컴퓨터, 모바일/핸드폰, TV, 세탁기/건조기, 워크스테이션
------	---

1) 관보 URL
<https://www.legifrance.gouv.fr/>

	Clothes Washers, Computer Monitors, Desktop Computers /Personal Computers, Electric Lawnmowers,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(Abv: EEE), Electronic Displays [Other Names: Video display devices] , Laptop/Notebook Computers, Mobile/Cell Phones, Televisions, Washer /Dryers, Workstations
HS Code	84, 85
對발행국 수출액 (천불)	1,076,115 (2022년 기준)

□ 규제범위

○(적용품목)

- 전기 및 전자 장비
 - 세탁기
 - 컴퓨터 모니터
 - 데스크톱 컴퓨터/개인용 컴퓨터
 - 전기 잔디 깎는 기계
 - 전기 및 전자 장비(Abrv: EEE)
 - 전자 디스플레이[다른 이름: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]
 - 노트북/노트북 컴퓨터
 - 모바일/핸드폰
 - TV
 - 세탁기/건조기
 - 워크스테이션

○(적용대상)

- 생산자
- 수입업자
- 유통업자
- 전기 및 전자 장비의 기타 공급업체
- 판매자
- 프랑스에서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웹사이트, 플랫폼 또는 기타 온라인 유통 채널을 사용하는 사람들

□ 환경법 규제

- 환경법 규제 파트 9절 1장 5권 타이틀 IV에 다음과 같이 하위 섹션 5가 추가됨
 - 지속가능성 지수 표시

□ 환경법 R. 541-233 (지속가능성 지수)

- L. 541-9-2조에 제공된 지속가능성 지수는 새 장비를 구매할 때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10점 중 1점으로 구성됨
- 환경 및 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포함되고 본 조에 따라 채택된 장비의 각 범주에 대해 지속가능성 지수는 R. 541-210조의 I에 제공된 수리가능성 지수를 관련 장비 범주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수임
 - 이 지수는 이 장비의 각 모델과 관련이 있음

□ 환경법 R. 541-234 (용어 정의)

- 시장 출시(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)
 - 상업적 활동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서 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한 장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모든 행위
- 시장 출시(Placing on the market)
 - 국내 시장에서 장비를 최초로 제공하는 것
- 생산자(Producer)
 - 장비를 제조하거나 자신의 이름 또는 브랜드로 장비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
- 수입자(Importer)
 -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장비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
- 유통업체(Distributor)
 -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를 제외한 공급망에 속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국내 시장에 판매용 장비를 제공하는 자

- 판매자(Seller)
 - 상업 활동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원격을 포함하여 장비를 판매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
- 원격 판매(Distance selling)
 -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하나 이상의 원격 통신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전문 판매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조직화 된 판매 시스템의 맥락 내에서 전문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원격으로 체결되는 계약
- 모델(Model)
 - 지속가능성 지수를 계산할 목적으로 모든 단위가 동일한 관련 기술적 특성을 공유하는 장비의 버전임

□ 환경법 R. 541-235 (지속가능성 지수 제공 절차)

-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장비에 대해 지속가능성 지수 및 이를 설정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명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설정해야 함
-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각 모델에 대해 장비의 상장 및 인도 시점에 유통업체 또는 판매자에게 전자 형식으로 무료로 전달해야 함:
 - (가) 주문에 의해 제공된 조건 및 표시에 따른 지속가능성 지수
 - (나) 주문에 따라 제공된 형식에 따라 지속가능성 지수 점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표
- 판매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, 유통업체는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상장 및 인도 시점에 (가) 및 (나)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수 및 점수가 포함된 세부 표를 판매자에게 무료로 전달해야 함

- 색인은 주문에 의해 규정된 표시를 준수하면서 라벨링 또는 마킹을 통해 각 장비 또는 포장에 직접 부착할 수 있음
- 상기에서 언급된 전자 형식 정보는 전자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며,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장비 모델의 마지막 단위가 시장에 출시된 후 최소 2년 동안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무료로 전달해야 함
 - 요청하는 사람에게 5영업일 이내에 제공함

□ 환경법 R. 541-236 (행정 당국)

- 지속가능성 지수를 설정하기 위한 매개변수에 대한 중앙 집중식 액세스는 행정 당국에 의해 설정됨
- 환경 및 경제 장관의 법령이 적용되는 각 장비 범주에 대해 예비 부품 가격 기준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지속가능성 지수 와이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매개변수는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된 기준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함
 - 이 데이터에는 해당 장비 모델의 식별 및 계산 방식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
 - 이 데이터는 홍보법 제541-235조에 언급된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책임하에, 홍보법 제323-2-1조에 언급된 공공 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공개되며,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재사용이 허용됨
 - 모델의 경우, 지속가능성 지수 점수 계산이 업데이트되는 경우, 해당 데이터는 업데이트 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위에 설명된 조건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함

□ 환경법 R. 541-237 (지속가능성 지수 표시 방법)

- 장비가 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는 주문에 따라 제공되는

방식과 표지판으로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공한 지속가능성 지수를 판매되는 각 장비 또는 바로 근처에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

- 장비가 원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는 장비의 프레젠테이션과 장비 구매를 허용하는 모든 웹 페이지에서 주문에 의해 제공된 방식과 표지판으로 가격 근처에 지속가능성 지수를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표시함
- 판매자는 또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장비의 지속가능성 지수 점수에 대한 세부 정보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
 - 장비가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, 지속가능성 지수 세부 점수표는 진열대에 비치되어야 함
 -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사본을 발급해야 함
 - 장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경우, 지속가능성 지수 세부 정보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, 지속가능성 지수가 표시되는 동일한 웹 페이지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함

□ 환경법 R. 541-238 (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지수)

- 지속가능성 지수는 다음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계산됨:
 - (가) 장비의 수리 가능성과 관련하여 10점 만점
 - (나) 장비의 신뢰성과 관련된 점수는 10점 만점
 - (다) 해당되는 경우, 장비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데이트와 관련된 10점 만점의 점수
- 지속가능성 지수는 명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(가), (나) 및 (다)에 언급된 점수에서 얻어야 하며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하나의 점수로 표시되어야 함

- 대상 장비의 각 범주에 대해 환경경제부 장관의 명령으로 범주별 기준 및 지수 계산 방법을 포함한 모든 기준 및 하위 기준을 지정해야 함

☐ 부속서 2

- 이 법령의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

☐ 부속서 3

- 이 법령은 프랑스 광화국 관보에 게재됨

3

관련 법령 및 표준

☐ 동 법령에 의해 폐지될 법령

-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수리 용이성 지수, 법령 번호 2020-1757

☐ 참고 법령 및 지침

- 프랑스: 폐기물 방지 및 순환 경제 촉진, 법률 2020-105
- 프랑스: 폐기물 수집, 회수,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재정 기부, 환경법 조항 L541-9 ~ L541-10-8, 2000
- EU: 폐기물 지침, 2008/98/EC